

‘만주국’의 협화회와 재만 조선인

신 규 섭 일본 스루가다이 대학 (shings@soleil.ocn.ne.jp)

1. 머리말

제국일본은 ‘민족협화’를 통치이념으로 한 ‘만주국’을 건설하고, 재만 조선인통치에 대해서는 ‘민족협화’에 근거해서 전만조선인 민회연합회를 통해서 통합정책을 추진했다¹⁾. 그러나 그 통합정책은 재만 조선인과 중국인과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고 조선인의 통합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치외법권의 철폐와 동시에 전만 조선인민회연합회를 해산하고 조선인을 행정기관 및 협화회에 재편성했다²⁾.

치외법권의 철폐와 때를 같이하여, 관동군은 조선인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재만 조선인 통치방침을 결정했다. 관동군 사령부는 제1차 치외법권철폐 직후인 1936년8월5일, ‘재만 조선인 지도요강’을 발표하고, 조선인 통치에 대한 기본방침을 변경했다. 먼저 지도방침으로써,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요인인 것을 강조하고 나서, 조선인이 스스로 자각해 ‘만주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서 ‘만주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타민족과 협화 융화함과 동시에, 균

등의 조건하에서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지도요령으로써, ‘민족협화’의 정신을 각성하고 특히 ‘만주국’에의 의무이행의 의식 및 근로정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핵심적 지도계층’을 양성하고, 기존의 단체는 협화회에 통합함과 동시에 자정적 교화를 실시하여 종래의 민족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조선인을 ‘만주국’에 철저히 통합하기 위하여 조선인 민회를 비롯한 단체를 협화회에 통합하기로 했다.

본 논문은 먼저 치외법권철폐후 ‘만주국’통치이념인 ‘민족협화’하에서, 그 통합과정인 행정기관 및 협화회의 재편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협화회에서의 조선인의 활동을 협화회의 조직변천과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협화회의 조선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및 치외법권철폐후의 민족관계, 민족모순의 실태를 밝힌다.

이 협화회에 관해서는, 협화회의 설립목적 및 설립과정, 조직변천에 관한 연구와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³⁾. 전자는 협화회를 복수민족국가인 ‘만주국’의 정치적 안정에 착목한 平野

논문집수일: 2004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04년 6월 25일

1) 전만조선인 민회연합회의 설립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신규섭 「조기만주국에서의 조선인 통합정책-전만조선인 민회연합회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식민지연구』 9, 1997년7월)을 참조.

2) 치외법권철폐에 관해서는, 신규섭 「재만조선인의 ‘만주국’관 및 ‘제국일본’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 2003년9월)과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조선인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 제43집, 2003년9월)을 참조. 그 외 치외법권에 관한 연구는 田中隆 · 「대립과 통합의 ‘선만’관계·‘내선일체’·‘오족협화’·‘선만일여’의 諸相」 (『히스토리아』 제152호, 1996년9월)과 副島昭 · 「‘만주국’통합과 치외법권철폐」 (山本有造편 『만주국’의 연구』 료오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3년)가 있다.

健一郎, 총력전체제구축과정의 일환으로서 분석한鈴木隆史 등의 연구가 있다. 후자는 협화회의 지방통치의 역할을 행정기관과의 갈등에 착목해서 분석한 奥村弘, '만주국'의 국민동원을 둘러싼 협화회의의 노선대립을 분석한 임성모에 의한 연구가 있다. 또 재만 조선인과 관련해서는 윤휘탁과 田中隆一에 의한 '민족협화'운동 및 징병제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협화회에서의 민족간 관계의 실태 및 '내선일체'와의 길항에 의한 협화회의의 한계, 그리고 조선인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치외법권의 철폐로 조선인민회가 해산되어 '만주국'의 행정기관 및 협화회에 재편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어서 '민족협화'를 기본이념으로 한 협화회의의 분회와 연합협의회에서의 재만 조선인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협화회에서의 조직개편으로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조선인의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합협의회에서의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민족대립과 통합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제국일본이 다민족국가인 '만주국'의 통합을 위해 실시한 치외법권철폐후의 다민족정책 및 그 실천기구인 협화회의의 실태를 분석하여 재만 조선인의 통합정책뿐만 아니라, 제국일본의 '만주국' 통합정책 및 식민지정책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 최근 친일문제에 대한 재규명의 움직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만주국'에서의 친일 단체와 친일 인물의 형성과정 및 친일 논리, 활동을 규명하고, 조선 내 및 일본 등의 타지역의 친일문제와의 비교·상이점을 분석하여 그 논쟁을 심화시키는데도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1) 행정기관의 변경

① 조선인민회의 해산

제국일본은 1935년2월에 외무성내에 '만주국 치외법권 철폐에 관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치외법권 철폐를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만주국'현지에도 '만주국'과의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관동군, 대사관, '만주국'관계자로 구성된 現地委員會를 설치했다. 이 현지위원회는 1935년11월30일에 '치외법권 철폐 및 만철부속지 행정권의 조정 내지 위양에 관한 기관(諸위원회) 및 결정 요강'을 정했다. 이 기본방침을 책정한 뒤, 일본인거류민 처리에 대해서만 심의가 열려, 1936년5월18일에 그 처리요강을 정했다. 이 요강에는 일본인거류민회의의 사무 중, 호적, 신사, 교육, 및 영사관고유사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는 직원, 시설과 함께 7월1일자로 '만주국'행정에 인계할 것 등의 처리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요강에 근거해서 민정부(民政部)는 29일에 '민회직원시설인계요강'을 정리했다.

제1차 조약이 조인된 다음 날인 6월11일, '만주국'은 신경(新京)의 일만(日滿)군인회관에서 민정부 주최로 각성공서 총무청장(各省公署總務廳長), 특별시총무처장, 흥안각성 참어관(興安各省參事官) 회의(각성재정주임회의를 포함)를 개최하여, 일본인거류민회처리요강 및 지시사항에 관해 협의했다.

이에 비해, 조선인민회처리는 12일에 열린 각성총무청장간담회에서 일본인거류민회의 처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각성으로부터 처리 요청이 나왔다. 이에, '만주국'은 조선인민회 처리안을 작성해, 이 안을 기초로 18일에 열린 현지위원회(現地委員會)에서 '조선인민회처리요강'을 결정했다. 이

3) 平野健一郎 「만주국 협화회의의 정치적 전개」 (『「近衛신체제」의 연구』 일본정치학회년보, 1973년), 鈴木隆史 「만주국 협화회 사시론1·2」, 『계간 현대사』 제2호·제5호, 1973년5월·1974년12월, 奥村弘 「만주국 협화회의의 지방통치상의 위치」 (山本有造편 「만주국」의 연구」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3년), 임성모 「만주국」 협화회의의 총력전체제구상연구-국민운동-노선의 모색과 그 성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년), 윤휘탁 「만주국」의 「민족협화」운동과 조선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6, 2000년12월), 田中隆一 「만주국」 협화회의의 「재만 조선인」정책과 징병제-청년문화운동과의 관련해서-」 (帝塚山학원대학 「일본문학연구」 제33호, 2002년2월).

요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민회의의 사무 또는 사업 중 교육 및 의례(儀禮)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한 일반행정 에 관한 것은 만주국에 인계한다.
2. 앞 항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직원은 필요한 만큼 만주국에 인계한다.
3. 시설과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에 인계하고, 부락에 인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현시(縣市)에 인계한다.
4. 인계직원의 인원수 및 소속은 별표에 의한다.
5. 시설인계에 따른 채무는 만주국이 계승한다.
6. 인계직원의 급여는 강덕(康德)3년3월말 현재의 급여에 의한다. 이 기간 이후에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일의 급여에 준한다. 주 택수당 그 외의 수당도 고려한다.
7. 인계직원이 사용하는 비품류는 무상으로 계 승한다.
8. 민회사무소는 가급적 해당 단체의 청사내에 이전한다.
9.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 에서 관계일만기관의 협의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⁴⁾

이 요강은 6월20일, 특별시공서와 각 성공서에 훈령으로 내려가, 조선인민회의의 이양이 실행되었다. 각 현시에서의 인계는 일본 및 ‘만주국’의 양 감독기관 등의 입회 하에서 민회장과 현·시장이 인계목록조서에 서명날인하고 실시되었다. 7월1일까지, 신경, 봉천, 하얼빈, 용진(龍鎮)조선인민회

등 일본과 ‘만주국’ 양쪽의 통치기관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부터 지방행정기관에 흡수되었다⁵⁾. 이와 같이 재만 조선인에 대한 행정기관은 ‘만주국’의 지방행정기관에 재편되어 일원화되었다.

행정사무의 이양과 함께, 민회직원도 인계되어, 같은 해 9월까지 직원 395명중 54명이 지방 행정기관에 임명되었다. 봉천거류민회 회장인 조원환(曹元煥)은 민회해산직후 봉천시 주사(主事)로 전직해, ‘만주국’의 지방관리가 되었다. 조원환은 그 후 협화회 봉천성 본부 및 시본부의 중견 간사, 공업학원의 이사를 역임했다⁶⁾. 그 외에도 전만조선인 민회연합회의 직원인 조선총독부촉탁(囑託)의 농사지도원을 일본의 산업방침의 추진을 위해 민정부 및 관계각 성공서의 촉탁으로 겸임시켰다⁷⁾.

또한, 조선인민회가 해산됨에 따라 민회가 경영하고 있던 금융부연합회와 금융부도 ‘만주국’의 금융합작사법의 적용을 받는 등, 조선인단체는 ‘만주국’의 관련기관에 재편되었고, 조선인은 행정 기관 및 관련단체에 편입되었다.

재만 조선인단체의 중심인물이 ‘만주국’의 행정 기관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제국일본이나 조선총독 부에 종속되어있던 재만 조선인유력자가 ‘만주국’의 권력기관에 종속되는 것으로, 재만 조선인 유력자에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참고로 1940년 현재 ‘만주국’의 조선인관리는 약2300 명에 달했다⁸⁾.

② 해산후의 처리

‘만주국’과 조선총독부는 1937년10월15일부터 18일까지 조선총독부에서 치외법권의 철폐와 조

4) 西本良雄 「居留民會の處理概況」、『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44,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1936.10. 69~70쪽.

5) 앞의 논문, 71쪽.

6) 『만선일보』, 1939년12월11일자.

7)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滿洲國史 總論』, 第一法規출판주식회사, 1970년, 488쪽.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51,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7.5. 151쪽. 참고로 일본인거류민회직원 206명 중 약100명이 ‘만주국’행정기관에 편입되었다.

8) 『協和運動』,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 제3권 제12호, 123쪽.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1943년, 35쪽.

선인민회의 해산 후의 재만 조선인관계의 행정사무시설, 경비 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 그 결과 11월6일에 ‘법권철폐에 따른 조선인 관계의 행정사무시설경비 등의 처리에 관한 건’을 합의했다⁹⁾. 이 협정의 중요한 내용은 ‘재만 조선인자체 교육행정처리요령’, ‘이민사항 처리요령’, ‘금융회 처리요령’, ‘위생시설처리요령’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먼저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만철부속지의 14교 이외는 전부 ‘만주국’에 이양하고, 이양학교에서의 교육방침은 “일본인이라는 본질에 근거를 두고 만주국 구성분자로써 건국의 취지에 합치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이민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민시설은 사업, 직원 등 일체를 ‘만주국’에 이양하되, 종래의 방침을 유지하고 보호시설을 계속한다. 단지, 새 이주민에 대해서는 ‘선농(鮮農)이주통제 및 안정실시요령’과 ‘만주국’의 일반방침에 의한 것으로 정했다.

금융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본측과의 협의에서는 치외법권의 철폐와 동시에 금융회는 해산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지금까지 조선총독부가 한 것과 같은 보호를 유지하고, 또 금융회연합회도 당분간 존속시키고 이사장이 금융합작사의 이사장을 겸임 할 것으로 되어, 급격한 변화는 피하려고 했다¹⁰⁾.

마지막으로, 위생시설에 대해서, 민회가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던 함경북도도립회령병원, 용정분원 및 연길분원은 간도성공서에 인계하고, 촉탁의(囑託醫)도 현시공서의 촉탁의로서 순회진찰을 하도록 했다¹¹⁾.

이와같이 합의내용이 지금까지 조선총독부가

시행해 왔던 생활안정에 관한 보호조치를 견지하려고 한 것은 치외법권의 철폐로 행정권이 ‘만주국’으로 이양된 것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또 만철부속지에서 조선인에 대한 통제력을 남긴 것은 ‘일본신민화’를 고수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회의가 해산되자, 그 통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전만조선인 민회연합회도 해산하게 되었다.

(2) 협화회의의 재편

제1차 치외법권이 철폐되고 조선인민회의의 행정기능이 ‘만주국’의 행정기관으로 흡수되자, 관동군사령부는 같은 해 8월5일, ‘재만 조선인 지도요강’을 발표하고 조선인민회의의 나머지 기능을 협화회에 통합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협화회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왕도정치(王道政治)’·‘민족협화(民族協和)’사상을 재만 제민족에게 침투시켜 피지배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1932년7월25일에 관동군의 지도하에서 설립된 일종의 사상교화(思想教化)단체였다¹²⁾. 설립 당시 협화회는 각지에 분회를 조직하고, 지주·상인 등 지역지배층을 입회시켜 그 세력을 확대했다.

치외법권철폐의 방침이 정해지자, 협화회는 ‘만주국’을 구성하는 각 민족을 ‘민족협화’의 이념에 통합·조직하기 위해, 1936년1월21일부터의 각성사무국장회의에서 재만 각 민족 및 재만 일본인에게 그 조직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고, 2월13일에는 중앙사무국에 직속하는 임시신경특별공작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민족에 대한 조직공작에

9)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1943년, 104~109쪽.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福報告事項」, 1938년, 30~31쪽.

10) 앞의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1943년, 121쪽. 금융회는 1940년에 농업합작사에 통합되었다.

11)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1943년, 104~109쪽.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福報告事項」, 1938년, 30~31쪽.

12) 협화회의의 설립 경위, 개조 및 성격에 관해서는 平野健一郎 「滿洲國協和會の政治的展開」, 일본정치학회연보 「近衛新體制」의 연구, 1973년, 鈴木隆史 「滿洲國協和會史試論(1)·(2)」, 「季刊 現代史」 제2호·제5호, 1973년5월·12월, 을 참조.

착수했다¹³⁾.

세보고』 41쪽.

표1- 협화회민족별회원수

	1938년11월	1939년7월
조선인	41,713	63,834
일본인	128,361	129,839
중국인	960,881	1,061,938
몽고인	4,001	6,689
러시아인	2,879	3,481
그 외	49	286
계	1,137,884	1,266,067

참조: 1938년도는 『만주국사 각론』 107쪽,
1939년도는 『강덕6년도 전국연합협의회회

신경조선인민회와 신경시와의 조선인민회의 인
수인계가 끝난 직후, 신경조선인민회는 협화회 신
경조선인민회분회를 설립하기 위해, 신경총영사관
조선과 타니 테츠지(谷 哲次), 전만조선인연합회
이사 박준병(朴準秉), 신경조선인민회 이사 박춘
금(朴春琴)을 간사로 하는 준비위원 62명으로 구
성된 준비위원회를 7월20일에 구성하고 설립준비
에 착수했다¹⁴⁾. 그 결과 분회가 “만주제국 협화회
의 강령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목적
으로 9월5일에 설립되었고, 분회 초대회장으로는
민회회장이었던 김도근(金道根)이 선임되었다¹⁵⁾.

표2- 협화회민족별회원수(1939년3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몽고인	러시아인	그 외	합계
수도본부	5,564	34,566	51,429	-	-	324	91,883
봉천성	3,184	50,827	238,277	74	71	118	292,551
길림성	4,628	5,171	340,125	177	4	1	350,106
용강성	358	4,139	51,371	774	36	3	56,681
열하성	12	1,226	42,505	2,185	-	1	45,929
빈강성	1,824	7,993	72,214	137	471	-	82,639
금주성	59	4,155	55,078	1,879	5	1	61,177
안동성	2,368	5,067	70,400	28	-	-	77,863
간도성	19,348	1,721	15,252	-	6	23	36,350
삼강성	1,728	1,583	17,402	-	46	-	20,759
통화성	4,564	649	28,517	-	-	-	33,730
목단강성	5,008	4,952	24,855	-	57	7	34,879
흑하성	102	676	4,367	-	7	-	5,152
홍안동성	4	325	6,022	638	32	-	7,021
홍안남성	-	-	-	-	-	-	-
홍안서성	6	123	1,350	21	-	-	1,500
홍안북성	38	934	3,494	151	1,226	-	5,843
합계	48,795	124,107	1,022,658	6,064	1,961	478	1,204,063

참조: 『만선일보』 1940년1월1일자에서 작성.

13) 鈴木隆史 『日本帝國主義と滿洲 1900~1945』 하, 塙書房, 1992년, 234쪽.

14) 『회보』 제42호, 1936년8월, 92쪽.

15) 『회보』 제43호, 1936년9월, 85쪽.

설립 당시 신경조선인인구는 약8000명이었는데 이중 381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이 민회분회는 협화회가 1935년에 민족분회의 설립을 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설립된, 조선인으로만 구성된 민족분회였다. 참고로 협화회 신경일본거류민분회가 설립된 것은 3일 뒤인 9월8일이었다.

그 후, 계속해서 민족분회가 결성되어, 15일에는 본계호(本溪湖)조선인민회분회와 의란현(依蘭縣) 협화회의 제5분회로서 일본인과의 혼성분회가 설립되었다¹⁶⁾. 다음해 1월8일에는 사평가(四平街)조선인민회분회가 설립되어 분회장에는 민회장이었던 박재용(朴在庸), 부분회장에는 부회장이었던 김형용(金亨龍)이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회분회는 조선인민회의 기

능과 시설의 일부가 ‘만주국’에 이양된 뒤에 남은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인분회가 어느 정도 설립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신경과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본계호와 사평가와 같은 지방에서도 설립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통치기관에 편입되어 ‘만주국’의 정책에 편입되어갔다. 또한 ‘만주국’의 행정기관 및 협화회에 진출된 재만 조선인 유력자는 ‘만주국’의 정책을, 혹은 ‘만주국’에서 여과된 제국일본의 정책을 일반 재만 조선인에게 침투시키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인민회가 협화회분회로 재편됨에 따라, 협화회의 조선인 회원도 급증했다. 1936년도와 1937년도의 회원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표 3- 협화회민족별회원수(1940년10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몽고인	러시아인	그 외	합계
수도본부	5,750	36,185	56,305	35	171	124	98,570
봉천성	5,608	75,039	472,577	162	38	121	553,545
길림성	7,911	4,055	349,685	1,103	4	-	362,758
용강성	187	4,299	49,498	1,279	9	-	55,272
열하성	16	1,499	71,913	2,527	-	-	75,955
빈강성	2,018	7,669	95,061	277	1,481	-	106,506
금주성	380	5,609	127,224	3,602	4	13	136,832
안동성	3,006	3,556	117,856	-	-	1	124,419
간도성	46,264	2,233	12,619	-	18	23	61,157
삼강성	1,592	5,135	32,713	-	-	-	39,440
통화성	5,545	1,464	31,697	-	-	-	38,706
목단강성	5,396	8,050	32,638	-	223	-	46,307
흑하성	94	691	5,352	-	-	-	6,137
홍안동성	14	689	6,174	1,321	260	-	8,458
홍안남성	-	-	-	-	-	-	-
홍안서성	23	260	9,490	141	1	-	9,915
홍안북성	37	898	3,591	24	1,426	-	5,976
북안성	1,004	1,653	45,429	14	1	-	48,101
동안성	2,525	1,469	13,284	-	7	-	17,285
합계	87,370	160,453	1,533,106	10,485	3,643	282	1,795,339

참조: 『만선일보』 1941년1월1일자에서 작성.

16)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 「協和會民會各地に生る」, 『회보』 제44호, 1936년10월, 91쪽. 제1,2,3,4분회는 중국인분회이다.

표1과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1938년11월에는 4만1713명, 1939년3월에는 4만8795명이었던 것이 1940년10월에는 8만7370명으로 증가했다(표3). 전시체제의 강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해 2년간에 4만6000명 증가해 2.1배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에 일본인회원이 1.3배, 중국인회원이 1.6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조선인회원의 증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협화회 전회원 중에 조선인회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8년에 3.7%이었지만, 1940년에는 4.9%로 미미하긴 하지만 증가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1940년도의 협화회 전회원 중 각 민족별 비중을 보면, 일본인회원과 중국인회원은 각각 8.9%, 85.4%를 차지해, 숫적으로 협화회에서 조선인의 위치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재만 조선인 인구중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8년에 3.9%(같은 해 인구는 105만6308명)에서 1940년에는 6.6%(표4)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협화회의 조직이 조선인 사회에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회원의 증가는 간도성에 집중되어, 1939년3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증가한 3만8575명중, 간도성에서의 증가회원수는 2만6916명으로 약70%를 차지했다.

표 4- 재만조선인의 쏠인구(1940년10월)

지역별	조선인수	지역별	조선인수
수도본부	41,818	통화성	90,005
봉천성	145,856	목단강성	105,212
길림성	136,343	흑하성	1,408
용강성	6,809	홍안동성	1,515
열하성	1,284	홍안남성	8,732
빈강성	56,086	홍안서성	726
금주성	20,185	홍안북성	898
안동성	58,457	북안성	22,092
간도성	582,427	동안성	25,662
삼강성	30,538	합계	3,138,879

참조: 『국내에 있어서의 선계국민실태』 1943년, 26-27쪽.

또 1939년도 간도성의 회원수는 1만9348명으로 전회원의 40%나 차지했지만 다음해인 1940년에는 4만6264명, 53%로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간도성의 조선인인구가 만주 전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특별한 현상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간도성 협화회에서는 타지역보다 조선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각성별 회원수와 인구의 비율을 보면(1940년도, 표3과 표4), 신경수도본부의 회원은 5750명으로 13.8%, 동안성은 2525명으로 9.8%, 간도성은 4만6264명으로 7.9%, 통화성은 5545명으로 6.2%, 길림성은 7911명으로 5.8%, 삼강성은 1592명으로 5.2%를 차지해, 협화회의 세력이 주로 ‘만주국’수도인 신경 과 조선인집중거주지인 간도성 및 길림성, 그리고 새 이주자가 많은 동안성과 삼강성에 침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홍안남성을 제외한 각성에 걸쳐 그 세력을 확대해 갔다.

표 5- 전국연합협의회대표의 민족별인구

	정원	일본인	만주인	몽고인	조선인
1934년도	97	5	94	1	4
1935년도	91	2	84	3	2
1936년도	117	3	104	6	4
1937년도	170	19	138	5	8
1938년도	172	29	126	5	12

참조: 만주제국협화회 『강덕6년도만주제국협화회 현세개요』, 72-73쪽.

이상과 같이, 치외법권철폐에 동반해서 관동군은 재만 조선인에게 ‘민족협화’를 침투시켜 ‘만주국’에 통합하기 위해, 협화회에 편입했다. 그리고 전시동원체제가 진행됨에 따라 협화회의 참여를 강화해 갔다. 한편 재만 조선인은 치외법권철폐로

종래와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불안으로 인해, 각 민족의 ‘평등·공존공영’을 취지로 ‘민족협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화회에 참가한 것이다. 더욱이 치외법권철폐를 계기로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만·반일의식에서 일본의 지배정책이나 ‘일본신민화’라는 동화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작용했다.

(3) 협화회에서의 조선인

① 분회의 조직과 활동

1) 민족분회의 신설과 대중운동화

협화회의 기본조직이고 활동의 주체인 분회는 1933년4월에 발표된 ‘조직강령’의 분회규칙 제1조에 의거해 직업별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상무(商務)·농무(農務)·관리·교육·군경 등의 직업별분회를 설치했다¹⁷⁾. 그러나, 직업별분회에 의한 활동은 “분회의 지도권은 거의 토호열신계급(土豪劣紳階級)에 장악¹⁸⁾되어 있고, 더욱이 “분회지도의 명확한 방침도 없이 거의 맹목적으로 분회를 조직”했기 때문에, “분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잘못도 있었고 타락해 신용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⁹⁾. 게다가, 협화회는 치외법권철폐에 대비해서 ‘민족협화’를 강화하고 일본인 및 조선인에게 협화회의 세력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협화회의 개조를 단행했다. 중앙사무국은 1935년2월, ‘국민운동의 제창, 조직의 정비운동대강’이라는 방침을 정해, 분회조직을 직업별과 민족별의 이원체제로 바꿨다. 분회조직에 새로이 민족분회를 설치해 이원체제를 택한 이유는 각 민족, 각 직업, 각 계급의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고 융화조화를 도모해 하나로 통합된 정치적 요구로 발전시키는 것이었

다²⁰⁾.

민족분회의 신설과 더불어, 다음해 7월25일에는 협화회의 기구를 개혁하고, 협화회의 확대강화를 위한 지도방침으로서 협화회를 전국민의 조직체로서 운영하고, 조직방침으로서는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전 민족과 모든 직업 및 계층에 걸쳐 광범위한 조직망을 형성할 것, 그리고 공작방침으로서는 정신공작(精神工作), 후생(厚生)공작, 선덕달정(宣德達精)공작의 3대 공작을 한층 철저히 일상생활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²¹⁾. 그 결과 협화회 조직은 정치동지적 조직에서 대중운동조직으로 전환했다. 분회와 회원수도 1936년3월의 1421개, 19만1905명에서 같은 해 9월에는 1887개, 43만9728명으로 반년만에 급증했다²²⁾.

민족분회의 신설과 대중운동조직에의 전환은 치외법권철폐후에 일본인이 ‘만주국’의 중핵으로서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만주국국민’의 결속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협화회의 가입을 확대해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²³⁾.

조선인분회도 앞에서 서술해지만, 그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조선인민회가 해산되자, 조선인민회에 대신 할 역할과 사업을 민족분회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인분회에서는 그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1. 만주제국건국정신의 작흥(作興)에 관한 사항
2. 민족협화에 관한 사항
3. 선덕달정에 관한 사항
4. 이도(吏道)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滿洲國史 各論』,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70년, 88쪽.

18) 滿洲帝國協和會編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1940년, 130쪽.

19) 滿洲帝國協和會編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1940년, 119쪽.

20) 滿洲帝國協和會編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1940년, 90쪽.

21) 滿洲帝國協和會編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1940년, 96~97쪽. 鈴木隆史, 앞의 1974년 논문, 110쪽.

22) 滿洲帝國協和會編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1940년, 99쪽.

23) 滿洲帝國協和會編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1940년, 97쪽.

5. 회원공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친목융화에 관한 사항
7. 그 외 필요한 사항²⁴⁾

조선인민족별분회의 사업은 주로 ‘민족협화’의 실현 및 위로부터의 정책의 선덕달정에 중점을 두고있지만, 회원공동의 복지증진 등 생활향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협화회 조직의 대중운동조직화는 조직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정부와 협화회의 관계, 협화회의 국가적 지위와 정치적 성격 등 아직 이념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의 확대공작이 진전될수록 정부관리에서 협화회로 전입한 신직원과 구직원과의 사이에 사상적 불일치와 대립이 생겼다²⁵⁾. 또 분회활동의 면에서도 신규직원사이에 회원 및 분회조직원칙에 대한 견해의 상이, 위로부터의 획일적인 분회의 조직화, 민족별분회의 급중에 의한 분회별 대립 등에 의해,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해되어 분회활동이 현저하게 형식화되고 정체되는 것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조선인민족별분회도 적극적인 활동이 되질 못했고, 분회조직의 방침이 또 다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²⁶⁾.

2) 지역분회의 도입

협화회의 중앙분부는 1938년1월에 ‘분회조직 및 분회활동지도요강’을 제정하고, 분회조직의 방침변경을 구체화했다²⁷⁾. 이 요강에는 침체한 분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회는 “협화회정신을 체득하고, 같은 이념을 가진 자각된 분자를 그 구성내용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분회는 그 조직지

구에서 사회적인 지도력을 갖아야 한다고 하고, 회원의 자발성의 환기와 지역의 지도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분회는 민족, 계급, 직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정한 동지의 자격을 갖춘 자를 엄선해 지도훈련하고 같은 이념을 갖춘 혈맹적 동지로의 결합을 도모하고, 각 조직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을 창달(暢達)해 불순한 사상의 발생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화회 운동의 확대발전을 실천적으로 기초를 마련하는 곳이라고, 민족별·직업별원칙을 폐지하고 지역별조직원칙을 도입했다²⁸⁾. 지역별분회로의 개편에 따라 조선인민족별분회도 지역별분회로 재편되었다. 예외조항으로 대도시와 같이 각민족이 혼재해서 그 보도(輔導)상 불합리한 지역은 민족별분회를 인정해 보도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지역별분회로의 방침변경은, 그때까지 통치기구의 통제하이기는 하지만 조선인민회, 조선인민족별분회로 이어져온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지 주로 도시에 집중 거주하는 일본인과 도시거주 조선인의 강한 요망에 의해, 도시지역의 일부에서는 명칭은 민족명을 사용하지 않고 각 민족을 회원으로 하는 분회가 계속 활동했다. 신경특별시, 하얼빈시, 목단강시 등의 조선인 민족별분회는 각각 계림(鷄林)분회, 금강분회, 제4분회로 개칭해서 사실상의 민족별분회로 활동했다.

그런데, 협화회 내에서는 조선인민족별분회의 존속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동만(金東晩)만주양곡회사참사는, 지역별분회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민족별분회와 다름이 없고 조선인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하

24) 「四平街朝鮮人民會分會結成式狀況」, 『회보』 제48호, 1937년2월, 88~90쪽.

25) 鈴木隆史, 앞의 1974년 논문, 119쪽을 참조.

26) 직업별·민족별의 분회조직방침을 지역별분회조직방침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風間秀人の 「農村行政支配」(淺田喬二·小林英夫 편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15年戰爭期を中心に-』, 時潮社, 1986년)은 분회가 보급(保甲)제도의 추진모체가 되어 지방정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분회주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27) 앞의 『滿洲國史 各論』, 104~105쪽. 앞의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216쪽.

28) 앞의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運動』, 59쪽.

다고 불만을 표명했다²⁹⁾. 참고로 위의 조선인민족별분회는 1943년까지 신경, 하얼빈, 영구의 3곳이 남았지만, 협화회의 각 현시본부에 조선인보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자 해산했다³⁰⁾.

한편, 농촌지역의 분회조직은 지역별분회로 개편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전지역에서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회의 명칭이 제1분회 혹은 북분회라도, 그 실상은 중국인민족별분회와 같은 것이었다³¹⁾. 또한, 간도지방과 같이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별분회는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분회로의 변경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협화회, 특히 분회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중국인이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생활영역과 전통,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으로도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조건하에서, 특히 간도지역과 같은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별분회는 중국인의 민족별분회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무순에서는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인이 약2000호를 넘었지만, 협화회의 공작은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선인은 협화회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³²⁾.

일본인의 집중거주지인 도시나 집단거주지의 분회는 일본인에 의한 민족별분회라고 할 수 있다. 타민족과 혼재하는 지역에서도 지배민족이었기 때문에 지역분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지위

에 있었다. 이와 같이 숫적으로 또 사회적 기반에 있어서 중국인과는 비교도 안되고, 또 질적으로는 완전한 일본신민의 자격을 인정받지도 못한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분회 및 협화회에서의 위치와 활동이 제약·위축되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불안정에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지역별분회의 상황을 보자. 먼저, 농촌지역에서의 지역별분회로의 개편은, 분회가 “소위 촌락공동체로 불리는 구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층사회군인 토호열신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구사회의 지도지배자에게 유리한 합법적·정치적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잘못하면 국책의 방향과는 반대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태였다³³⁾.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의 조선인에게는 더욱 “강력한 조직과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했고, 그 지도조직은 분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³⁴⁾.

이런 조건 속에서도, 간도에서의 분회는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³⁵⁾. 그 결과 조선인을 중심으로, 의용봉공대, 청소년단, 청년훈련생 등의 종합운동으로서의 농산물증산촉진운동, 근로봉사농정지 설정을 추진하려고 했다³⁶⁾.

그러나, 간도의 분회활동은 활발하지가 못했다. 그 이유는 현기시성(縣旗市省)본부직원과 도시분회직원이 봉급제고용이었지만, 간도와 같은 농촌분회는 거의 촌공(村公)직원을 겸임하고 있어 시

29) 『滿鮮日報』, 1940년3월7일자.

30) 앞의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59쪽. 이 조선인보도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논문과 시기가 다르므로 다음 기회에 검토하겠다.

31) 青田武重 「協和運動雜感」, 『協和運動』, 제1권 제3호, 1939년10월, 66쪽.

32) 『滿鮮日報』, 1940년4월12일자.

33) 佐藤太 - 「縣旗市連の動向と組織運動の將來-會組織の國民的基礎に就いて-」, 『協和運動』, 제2권 제5호, 1940년5월, 8쪽.

34) 앞의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87쪽.

35) 앞의 『滿洲國史 各論』, 106쪽. 간도에 1938년까지 민족별분회는 56분회가 남아있었다. 또 같은해 간도성의 협화회회원의 민족별인구는 조선인 1만8661명, 중국인 8046명, 일본인 1587명, 러시아인 6명, 그 외 21명으로, 비율은 조선인 66%, 중국인 28%, 일본인 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년정도 뒤인 1940년10월에는 조선인의 비율이 더 늘어나, 조선인 4만6264명(76%), 중국인 1만2619명(21%), 일본인 2233명(4%), 러시아인 18명, 그 외 23명을 차지했다.

36) 『滿鮮日報』, 1940년6월12일자.

간의 여유도 없고 보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이유는 “언어·풍습·습관이 다른 민족을 한곳에 집합해 무언가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민족융화가 아닌 감정 대립이 생길 뿐이다”고 한 것처럼, 지역별분회내의 민족간의 이해관계가 심각했고, 급기야는 조선인회원으로부터 민족별분회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³⁷⁾.

간도 이외의 조선인 소수지역에서의 상황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다. 협화회 해룡현본부의 사무장이었던 야마타 히로시(山田博)에 의하면, 조선인농민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로를 중심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들은 도회지에 거주하는 유력자에 지도를 받고 있다고 했다. 조선인은 ‘만주국’의 권력기구와는 별도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 조선인이 분회원이 되어도 중국인과는 서로 강한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만계(滿系)회원과는 같은 목적을 갖는 진정한 협동체는 아닌” 상태였다³⁸⁾.

야마타 히로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대립의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내가 수집한 정보는, 선계의 농업경영에 대해 일관된 정견이 없다는 것과 선농 대 만농의 의외로 강한 반감이었다. 이 반감은 작년(1941년-인용자)7월의 악선전발생 때에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만농은 선농에 대해 일계의 그늘에서 거만을 떨고 있다고 하고, 선농은 만농에 대해 무자몽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의 갈등이 현하 2만수천명의 선계와 20수만명의 만계와의 사이에 싸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중략) 이 갈등은 해룡만의 문제가 아닐 것

이다. 또 선계 대 만계만이 아니고 만계와 몽계, 그리고 우리들 일계조차 뒤에서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³⁹⁾

야마타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타민족간의 갈등, 일본인과의 갈등도 지적했고,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민족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해룡현이나 반석분회에서 실시했던 것처럼, 조선인의 통합을 위해 분회의 하부조직으로서 조선인반을 조직해, 평균5천지(天地)의 공동작업에 의한 근로봉사단, 1호당 1개월에 1장의 가마니를 국방헌금운동, 매일 아침6시부터 신사참배·청소·건국체조 등을 실시했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분회에의 참가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가를 환기하고 강제적으로 참가를 증대하기 위해, ①협화회원으로서의 신분을 지키지 않는 자 ②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자 ③청년단원에 입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분회가 하는 생필품의 배급을 중지하는 강경책을 취했다⁴¹⁾.

이상과 같이, 협화회는 ‘민족협화’를 한층 강화해 민족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주의’를 표방해 민족별분회를 폐지하고 지역별분회로 개편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해서는, 먼저 ‘만주국’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심어, 정책의 침투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민족간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고, 분회운동은 “소수민족은 도외시되든가, 소극적 내지 부수적인 것으로 밖에 안 되는 현실”⁴²⁾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 검토할 연합협의회(聯合協議會)에도 반영된다.

3) 민족대립에의 대응

민족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지역별

37) 『滿鮮日報』, 1940년8월29일자.

38) 山田博 「農村工作雜話」, 『協和運動』, 제4권 제10호, 1942년10월, 115~116쪽.

39) 山田博 「農村工作雜話」, 『協和運動』, 제4권 제10호, 1942년10월, 115쪽.

40) 山田博 「農村工作雜話」, 『協和運動』, 제4권 제10호, 1942년10월, 116쪽.

41) 『滿鮮日報』, 1940년11월30일자.

42) 李柱雲 「反映せられざる民意」, 『協和運動』, 제3권 제7호, 1941년7월, 62쪽.

분회로의 개편은 오히려 지역별분회 내에서의 민족간의 대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봉천 협화회본부는 1938년9월에 민족상호간에 알력마찰을 근절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천 선계공작간사회(奉天鮮系工作幹事會)를 설치했다⁴³⁾. 또 신경의 조선인보도기구인 계림분회는 1939년도의 보도운동으로서 “행정적 내지 교화적으로 만주국의 시책에서 격리되어있는 만주 조선인에 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자정(自淨)운동을 제창했다⁴⁴⁾. 구체적으로 자정운동은 민족잡거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조선인의 불명예스러움을 청산해서 조선인의 대외적 명예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조선인 스스로 내부적 정화를 실현해서 장래의 발전에 선결요건이 되는 내부적 충실을 꾀한다는 내용이었다⁴⁵⁾. 다시 말해, 자정운동은 ‘만주생활의 건설운동’으로서,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서 영주(永住)생활의 운동으로 제창되어 ‘만주 정착운동’ 혹은 ‘만주향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인에게도 “망향적 감정을 청산하고, 자연환경 혹은 생활양식에서 다른 만주 생활에 대해서 혐오적인 관념을 버리고 자기 적응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설해 갈 것”을 장려했다⁴⁶⁾.

그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재만 조선인이 민족적 혼주(混住)생활 및 ‘만주국’실정에 적합하도록 재편성 내지 재훈련을 하고, 정신적인 면의 운동을 통해 현실생활에 순응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국가의 통제경제정책에 순응하고, 통제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생

활부문에서의 마찰이나 불편을 최소한으로 막는 생활체제를 편성하는 것이었다.

자정운동의 중심적인 분회인 신경의 계림분회에서는 수도분회라는 특수사명을 고려해서, 1939년도 주요활동으로서 교통반의 결성을 비롯해서 직업보도(211명 알선), 이민안내소설치, 국방헌납 및 위문품헌납, 무료진료, 무주고혼위령제거행(無主孤魂慰靈祭舉行), 연극반 공연,

반조직 확대, 그 외 협화시간 라디오방송 등을 실시했다⁴⁷⁾.

신경의 계림분회 외에도 봉천의 실업자취직알선, 안동의 주택대책 등, 각지에서 조선인중등학교설립운동, 석탄·미곡 등의 생활필수품의 배급 및 가격안정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협화회는 분회조직원칙의 변경후, 자정운동과 생활개선을 통해서 재만 조선인의 ‘출가적 기분(出稼的 氣分)’을 해소하고 ‘만주국’을 조국으로 인식시켜 ‘만주국’에의 통합을 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37년7월에 시작된 중일전쟁에 의해 ‘만주국’은 전시총동원체제로의 이행을 급속히 추진했고, 다음해2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었다(5월11일 시행). 협화회에서도 국가총동원의 요청에 따라 전시동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고, 협화회의 기본조직인 분회의 역할도 한층 중시되게 되었다.

협화회의 수도본부는 1940년도 운동방침대강으로, 분회의 질적 강화를 꾀해, 분회를 중심으로 의용봉공대 및 청소년단의 확대강화를 기하는 방

43) 『滿鮮日報』, 1939년12월11일자.

44) 『滿鮮日報』, 1940년1월26일자.

45) 『滿鮮日報』, 1939년12월29일자.

46) 『滿鮮日報』, 1940년3월1일자.

47) 『滿鮮日報』, 1940년1월26일자. 1940년1월현재의 재신경조선인은 1만4000명정도로, 분회고문은 金子定一, 日高丙子郎, 崔南善, 朴錫口, 尹相弼 의 3명, 분회장은 朴准秉이고, 외곽단체로서 신경조선인협화문화부, 신경조선인협화체육부, 신경조선인협화청년단, 국방부인회계림조회, 실무학교, 협화가마니조회, 의용봉공대(義勇奉公隊) 등이 속해 있다. 또 계림분회는 종래 수도본부 吉野지구에 소속되어 있어서 수도본부와의 사무적인 연락도 吉野연락간사회를 통해 왔지만, 1940년2월에 계림분회의 요청에 따라 수도본부의 직속으로 하고 사무연락의 긴밀화를 꾀했다. 계림분회의 교통반은 1939년에 자동차운전수 등의 교통기관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최초의 직업별반으로 반원 500여명으로 결성되었고, 직업의 공동성과 생활상의 특수성의 연대를 통해서 상호간의 융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자정운동을 확대해 협화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했다.

침을 피하고, 그 실시를 위해서는 특히 정부 및 외곽단체, 각 기관 각 조직과의 제휴를 긴밀하게 함과 동시에, 수도본부직원간의 사상적·감정적 통일을 도모할 것을 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계림분회는 조선인중견 분회원의 육성을 위한 자흥회를 1940년8월에 설립했다⁴⁸⁾. 이어 9월11일에는 상무위원회를 열어 분회개혁을 실시했다. 종래 서무, 협화, 선덕달정, 후생, 동원훈련부로 나뉘어져 있던 조직을, 정세변화에 맞추어 분회운동의 기획성을 증시하기 위한 기획부, 청년운동의 합리적인 전개를 위한 청년부, 간사(間事)사항의 처리를 위한 간사부, 통제경제하의 경제문제처리를 위한 경제부외에 총무부, 조직부, 협화부로 개편했다⁴⁹⁾.

또 계림분회는 1941년11월2일에 간부전체회의를 열어, 의용봉공대 조선인중견의 육성에 대해 협의한 후, 국가총동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분회기능의 정비를 단행했다. 종래 분회의 기능은 광범위해서 협화회 분회로서의 본래의 성격에서 이탈했다고 지적하고나서 분회운영의 방침을 바꿨다. 종래 분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생활·교육에 관한 교육후원회, 실무학교 유지회 등 동원정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측면적인 지원에 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분회기능이 최말단까지 철저하게 미치게 해 분회의 활동을 전시동원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반(班)과 조(組)의 육성에 주력할 것, 또 분회운영의 방법으로서 분회내의 각부의 자주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새로 결성된 의용봉공대 조선인중견대의 육성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분회의 지도적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분회장을 일본인의 다카야마(高山)로 교체했다⁵⁰⁾.

분회의 전시동원조직에의 이행은 수도인 신경

의 분회를 거점으로 각 지역의 분회로 확대되어 갔다. 하얼빈의 조선인분회인 금강분회는 1940년도 공작방침으로, 동아신질서건설의 촉진과 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참가 공헌하여 헌신적인 실천을 단행하고, 회원의 안정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중요공작목표로서는 ①건설정신을 일상생활에 침투시켜 물심양면으로 총동원의 결실을 올리고 제반의 공작지도를 할 것 ②자숙자계(自肅自戒)운동을 철저히 실시해서 민족적 편견 및 마찰을 제거해 민족협화의 이상을 달성하고 제반의 공작지도를 할 것 ③지역반 중 한곳을 중점반으로 선정하고 지도공작을 철저히 해 모범반으로 만드는 것이었다⁵¹⁾.

그런데, 분회의 조직 및 기능이 국가총동원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분회의 생활관련의 역할은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금강분회가 생활개선을 위해 계획한, 중등학교설립, 지방농민에의 농업자금으로서 저리대출을 위한 동아상사주식회사의 설립, 분회 기간지의 발급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⁵²⁾.

이와 같이, 지역별분회로 개편되자, 주로 도시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인의 민족분회인 계림분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이 전개되었고, 만주생활의 건설운동과 같은 ‘민족협화’의 실현을 위한 공작과 함께, 생활의 안정향상을 공작을 전개했다.

그러나, 협화회가 전시동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감에 따라 조선인분회공작도 ‘민족협화’의 강화와 동원공작에 중점을 두어, 조선인의 생활향상은 경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조선인분회는 민족분회로서의 특수한 기능 발휘하지 못하고 조선인으로부터 분회정책에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더군다나, 조선인분회는 물자배급 등을 둘러싸고 지역별분회와

48) 中村寧 「國民組織の確立へ」, 『協和運動』, 제2권 제12호, 1940년12월, 99쪽.

49) 『滿鮮日報』, 1940년7월13일자.

50) 『滿鮮日報』, 1941년11월5일자.

51) 『滿鮮日報』, 1940년3월14일자.

52) 『滿鮮日報』, 1940년4월3일자.

마찰이 일어나는 등 생활에서의 새로운 모순이 발생했다⁵³⁾.

②연합협회의 조직과 활동

협화회는 협화회의 기본조직인 분회와 함께, ‘만주국’의 복수민족의 통합기구로서 연합협회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 연합협회의 목적은 ‘건국대업익찬의 국민운동’인 협화회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계급을 초월해 선덕달정을 철저히 하고, 도의국가건설의 경륜(經綸)을 창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올바른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켜 거국일치의 독단적인 협화정치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책을 민중에 침투시켜 도의적 절대 책임을 갖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⁵⁴⁾. 민의의 반영은 피지배민족에게 있어서는 흥미를 끄는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소수인데다, 몽고인지도를 위한 국무총리 대신직속의 흥안국, 혹은 백계러시아인을 위한 백계러시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해, 조선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구는 없고⁵⁵⁾, 더욱이 민족별분회가 해산되어 조선인의 입장을 반영할 단체도 없는 조선인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가급연합협회는 그 구성과 운영방법을 볼 때 민의의 반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먼저 가급본부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본부소재지 거주자에 편중되었고, 기관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성에서조차도 민간위원이 겨우 2,3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각급 연합협회의 대표도 지방유력자인 분회장 및 상무원(常務員)이 독점하고 있고, 직업별구성에서도 관공리, 관공리출신자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대한 실정인식이 결여되었고 지방의 사정

및 의견·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⁵⁶⁾.

게다가, 각급 연합협회의 민족별구성은 대체로 민족별인구비례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길현 연합협회의 1940년도의 대표는 전 대표 35명중, 조선인 23명, 일본인 4명, 중국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이 소수지방인 수화현(綏化縣)연합협회의 1940년도 대표는 전대표 35명중, 중국인 29명, 일본인 3명, 조선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또 각성연합협회의(1940년도)에서도 특정한 민족별로 편중되었다. 간도성 연합협회의 대표가 전 대표 20명중, 조선인 9명, 일본인 5명, 중국인 6명인데 비해, 안동성 연합협회는 전 대표 30명중(보결 3명은 별도), 중국인 20명, 일본인 8명, 조선인 5명으로 구성되었다. 간도지역 외에는 조선인대표가 소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연합협회의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대표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치외법권철폐전인 1936년도에 일본인이 3명으로 3%를 차지했지만, 철폐후의 1937년도에 19명으로 11%, 1938년도에는 29명으로 17%로 점차 급증했다.이에 비해, 조선인대표는 1936년도에 4명으로 3%였던 것이 1937년도에는 8명으로 5%, 1938년도에는 12명으로 7%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각급 연합협회의에서 회장 등 지도적 지위에서 협의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인대표는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는 것조차 곤란했기 때문에 불만이 증대되었다.

각급 연합협회의에서의 조선인의 불리한 입장

53) 『滿鮮日報』, 1941년11월13일자.

54) 앞의 『滿洲國史 各論』, 123쪽.

55) 『滿鮮日報』, 1940년10월9일자.

56) 『滿鮮日報』, 1940년4월24일과 6월29일자.

은 협화회의 운영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먼저, 의안작성에서 조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민족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는 묵살되기조차 했다⁵⁷⁾. 민족간 문제는 계급문제가 영키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의안작성의 책임자(분회장, 업무원, 반장, 조장) 및 그 설명과 협의를 담당하는 중견회원인 분회 대표 협의원이 주로 일본인 내지 중국인 중에서도 지역유력자였기 때문이다.

지역유력자가 거의가 하층민인 조선인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전무하며,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인을 희생시키는 주장조차 했다. 이것은 농촌에서 소작문제 등 조선인의 생활에 걸린 문제를 조선인이 제출하려고 할 때 잘 드러났다. 예를 들어, 1941년도의 서풍현, 개원현 및 심양현의 연합협의회에 참가한 이주운(李柱雲)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주에서의 소작료는 정액소작료로 환산하면 60%를 넘고, 소작농은 단순한 재생산력조차도 위축될 정도로 높은 소작료를 착취당하고 있으면서도 경작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소작료가 내려가지도 않고, 소작쟁의도 일으키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⁵⁸⁾. 따라서, 소위 유력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익에 반하는 사람의 의향을 표면화하는 것을 기피했고, 조선인소작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출하려고 하면, 순수한 소작문제인 문제를 민족불협화문제로 왜곡 해석해 주장하려 한다고 일축해 버렸다⁵⁹⁾.

이와 같이, 소수민족이나 빈농계층의 민의를 협의회에 반영하는 것조차 곤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개원현 협의회에 조건인의 교육문제 및 소작문제에 관한 건을 제출했는데, 그 방법은 조선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인분회인 제3분회의 명의를 빌려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서풍현 협의회에서는 소작제도에 관한 건을 조선인이 분회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분회명으로 제출했다가, 취소된 적도 있다⁶⁰⁾. 협의회에의 제출과정에서 이미 민족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또, 연합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개혁문제, 소작법 제정문제, 교육문제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안건은 거의 조선인이 제안한 것으로, 중국인과의 민족적 이해·대립을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았다⁶¹⁾. 이러한 안건은 표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연합협의회에도 상정되는 등, 각급 연합협화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거듭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각급 연합협화회의에서의 민족대립은 피지배민족간의 대립, 특히 중국인과 조선인의 대립, 중국인과 몽고인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일계대표에 대한 타민족의 태도는 거리를 두고 삼가고 있었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같은 심리, 민족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있는 현상”이었고, 피지배민족의 일본인에 대한 저항이라는 근본적인 민족모순은 수면 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⁶²⁾.

더욱이 민족간의 대립은 ‘선덕달정’을 목표로 하는 연합협화회뿐만 아니라, 협화회의 전 활동에도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중앙본부에서는 사태해결과 연합협화회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1939년도부터 새로운 의결방법으로서 중의통재제(衆議統裁制)의 채택을 결정했다⁶³⁾.

중의통재제에 대해서, 중앙본부가 작성한 ‘강덕

57) 李柱雲「反映せられざる民意」, 『協和運動』, 제3권 제7호, 1941년7월, 61쪽.
 58) 李柱雲「反映せられざる民意」, 『協和運動』, 제3권 제7호, 1941년7월, 61~62쪽.
 59) 李柱雲「反映せられざる民意」, 『協和運動』, 제3권 제7호, 1941년7월, 62쪽.
 60) 李柱雲「反映せられざる民意」, 『協和運動』, 제3권 제7호, 1941년7월, 62쪽.
 61) 弓場信夫「縣連視察所感」, 『協和運動』, 제1권 제1호, 1939년9월, 83쪽.
 62) 弓場信夫「縣連視察所感」, 『協和運動』, 제1권 제1호, 1939년9월, 81쪽.

표 6- 전국연합협의회에 제출된 조선인관계의안

	의안내용	제출한 省聯
1935년	금융원활화에 관한 건 소작권확보에 관한 건 이민사업조성에 관한 건	
1936년	滿鮮人간의 租佃 및 水利문제에 관한 건 교육방침의 확립과 제도쇄신 및 교육시설의 보급개선에 관한 건 농촌구제 및 금융기관설치의 건 민족협화구체화의 건 국민이민에 대한 정부보조의 건	
1937년	재만조선인교육문제해결책촉진의 건 만선인간의 소작료 및 수리문제의 건 재만선농의 소작권확보의 건 재만선인의 소작확보의 건 조선인이민에 관한 건 이민入植에 관해 기존 집단부락을 피하	봉천성 빈강성,신경 등 빈강성
1938년	교육의 일원화에 관한 건 조선인이민조성 적극화에 관한 건 만주에 있어서 선농이민지구제한 및 거주제한완화에 관한 건	빈강성 신경 길림성
1939년	소작제도개선에 관한 건 선농개척정책의 철저에 관한 건	통화,길림성 빈강성
1940년	재만선계교육에 관한 건 越境경작에 관한 건 재만선계無籍者취적에 관한 건 선계국민에 국법법적용에 관한 건 수전가능한 경지개간장려와 미곡증산에 관한 건 수전조성보호요망에 관한 건 수전개간허가제도의 개정간이화요망에 관한 건 미곡관리법 및 暫行농업이민취급규칙의 간이화와 운영합리화에 관한 건 기존반도개척민에 대한 자작농창정요망에 관한 건 간도성개발회사설립에 관한 건 미곡통제에 관한 건	빈강,길림성 등 간도성 통화성 용강성 봉천성 안동성 안동성 빈강성 북안성 간도성 간도성
1941년	선계학교교육개선에 관한 건 홍농합작자자금획득 및 영농자금대출원활화에 관한 건	봉천,통화성 빈강성
1942년	교육진흥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 농산물증산 및 농촌진흥에 관한 건	길림,통화성 봉천,간도성 등

참조: 『국내에 있어서의 선계국민실태』, 117-119쪽.

63) 앞의 『滿洲國史 各論』, 120쪽. 협화회가 연합협의회에서 중의통제제(衆議統裁制)를 채용한 목적에 대해, 앞의 鈴木隆史는 “만주국에서의 전시적 식민지 지배의 강화가 낳은 정부와 지방대표와의 대립적 체계를 ‘중의통제’의 명목하에서 연합협의회로부터 불식하는 것에 의해 연합협의회와 완전한 익관기관화(翼贊機關化)를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앞의 『滿洲國協和會史試論(2)』, 120쪽), ‘만주국’이 복수민족에 의해 구성되어있고 지방대표의 민의에 민족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이 내포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의통제제를 채용한 중요한 목적은 정부와 지방대표와의 대립적 체계의 불식이라는 지적보다, 일본인을 정점으로한 민족간의 대립의 불식에 있다고 생각된다.

6년도 공작요령’에서는, ①연합협회의 채택은 중의통재(만장일치의 새로운 형식)로 한다, ②채택의 궁극적인 표준은 문제의 처리가 국가목표에 합치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의한다, ③채택의 기술적인 방법은 의장이 이의(異議)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한다, 고 규정되었다⁶⁴). 다시 말해, 연합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은 협화회정신·건국정신에 합치되는 것, 혹은 “국익이나 사심없는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제한했다. 만약 이 원칙에 위배되면, 의안정리위원회에서 정리해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또 상정된 의안은 제안한 대표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나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의장이 건국정신에 근거해 통재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의안의 처리방법도 반드시 정부에 대해 그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결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회가 주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중의통재제에 의해 밑으로부터의 민의, 특히 민족적 의식이 농후한 조선인의 민의의 반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또 연합협의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민족대립이 표출되지 안되도록 했고, 오로지 정책의 침투와 실행에의 동원만이 강요되도록 되었던 것이다.

중의통재제를 채택한 다음해인 1940년에 연합협의회는 운영방침으로서 “연합협의회는 소위 선덕달정기관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협화회와 국가의 근본방침수립에 참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만주국의 유일한 참정기관임과 동시에, 회원대회의 성격을 띤 것이다”⁶⁵)고, 연합협의회가 “참정기관”임을 강조하고, 회원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연합협의회에서 민족간의 갈등·대립

및 연합협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중의통재제하의 1939년도 해룡현 연합협의회는 중국인지주와 조선인소작인간의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지만, 회의에서는 그 분쟁을 해결 못하고, 오히려 “선계대표는 민족적 이해에 빠져 만계대표에 악감정을 품게 하고 있다”고 해 그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중의통재로 운영되어도 중국인의 의장으로 있을 때에는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중의통재제의 한계를 드러냈다⁶⁶).

더욱이, 중일전쟁이후, 전시통제정책으로서 실시된 각종의 경제통제의 강제에 대한 불만, 배급문제에 대한 불만과 그 해결책이 각지의 연합협의회에 제안되었지만, 정부관계자도 자신이 없는 답변만을 할뿐 해결방안도 제시 못하는 협의가 계속되어 상정된 안건은 거의 미해결의 상태였다⁶⁷).

이상과 같이, 협화회는 ‘만주국’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민족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협의회를 통해서 각 민족의 민의를 융합하고 자발적으로 전시동원체제에 동원시키려고 했다. 재만 조선인은 이러한 연합협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의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계급적 이익을 동반한 민족적 이해관계에 의해 민족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연합협의회를 통한 각 민족의 자발적인 동원은 어렵게 되었다.

결론

관동군은 치외법권철폐후의 재만 조선인정책으로서, ‘만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민족협화’를 강조하고, ‘만주국’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강요하려고 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면서 재만 조선인단체는 ‘만

64) 앞의 「滿洲國協和會史試論(2)」, 120쪽. 野野村·雄 「滿洲帝國協和會の本質と主要內容(完)」, 『滿洲評論』, 2 제18권 제4호.

65) 佐藤太一 「縣旗市連の動向と組織運動の將來-會組織の國民的基礎に就いて-」, 『協和運動』, 제2권 제5호, 1940년5월, 6쪽.

66) 佐野五郎 「海龍縣康德6年度聯合協議會視察報告」, 『協和運動』, 제1권 제1호, 1939년9월, 71~72쪽. 전대표 50명중 중국인 42명, 조선인 6명, 일본인 2명으로, 일본인대표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협의회 의장에 일본인이 선임되었다.

67) 佐藤太一 「縣旗市連の動向と組織運動の將來-會組織の國民的基礎に就いて-」, 『協和運動』, 제2권 제5호, 1940년5월, 3~4쪽.

주국'의 행정기구와 협화회에 재편·편입되어, '만주국'의 통치체제에 흡수되었다. 특히 협화회의 재편은 조선인에게 '민족협화'를 침투시켜, 타 민족과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만주국'에의 통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재만 조선인은 치외법권철폐로 인해, 종래와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불안에서, 또 치외법권철폐를 기회로 '일본신민'이라는 구속에서 탈피해 조선민족으로서의 길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각 민족의 평등·공존공영을 주창하는 '민족협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화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협화회의 분회와 연합협의회에서는 조선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민족간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어갔다.

要(約)文

「滿州國」의協和會と在滿朝鮮人

申奎燮(日本 駿河台大學)

はじめに

本稿は「滿州國」協和會の組織と活動の分析を通じて、在滿朝鮮時の統合課程と實體を明らかにするのを目的とする。

日本の植民地政策及び大陸政策は先進帝國主義に大公支那がら帝國日本を擴大することであった.それを實現するための最高の統治理念として、朝鮮では「内鮮一體」(日鮮同祖)を、そして

「滿州國」では「民族協和」を主張した.これはただ、帝國日本の擴大と占領地の安定および戰爭動

員のための統合の手段にすぎなかった。

一方、日本の植民地統治正は侵略と收奪だけを重視下のではない.帝國日本の擴人と占領地の安定および戰爭動員のための効率的な方法である、自發的な參加を導きだす手段として統合を重視せざるをえなかったらう。

このような觀點から帝國日本が多民族國家である「滿州國」の統合のため組織した協和會の分析は、在滿朝鮮人の統合政策のみならず、帝國日本の「滿州國」統合政策及び植民政策を究明するものでもある。

協和會に関する先行研究⁶⁸⁾をみると、平野健一郎は協和會を複數民族國家である「滿州國」の政治的安定に着目して分析し、鈴木隆史は總力戰體制構築の一環として分析した.このほかにも任成模、田中隆一、奥村弘、尹輝鐸らの研究があげられる.特に、平野の研究から多くの示唆を受けたが、政治的な安定のため設立された協和會での民族間の實像に対する分析が足りなく、そのため「内鮮一體」との拮抗關係による協和會の限界を看過しているといえる。

本發表はまず、治外法權の撤廢で朝鮮人民會が解散され、「滿州國」の行政機關及び協和會に再編されていく課程を分析する.次に、協和會での組織改編の過程に浮彫りになった朝鮮人が置かれた状況について検討する.最後に聯合協議會の協議過程に現れた民族對立と統合の限界を指摘することにする。

(1) 行政機關の變更

① 朝鮮人民會の解散

帝國日本は1935年2月に外務省内に「滿州國治外法權撤廢に関する委員會」を設け、治外法權撤廢を具體的に推進した.「滿州國」現地でも「滿州國」との連絡をとるため、關東軍、大使館、「滿州國」關係者で構成された現地委員會を設置した.この現

68) 平野健一郎「滿州國協和會の政治的展開」《「近衛新體制」の研究》日本政治學會年報、1973年. 鈴木隆史「滿州國協和會史試論 1・2」《季刊現代史》第2號・第5號、1973年5月・1974年12月。

주국'의 행정기구와 협화회에 재편·편입되어, '만주국'의 통치체제에 흡수되었다. 특히 협화회의 재편은 조선인에게 '민족협화'를 침투시켜, 타 민족과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만주국'에의 통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재만 조선인은 치외법권철폐로 인해, 종래와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불안에서, 또 치외법권철폐를 기회로 '일본신민'이라는 구속에서 탈피해 조선민족으로서의 길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각 민족의 평등·공존공영을 주창하는 '민족협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화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협화회의 분회와 연합협의회에서는 조선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민족간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어갔다.

要(約)文

「滿州國」의協和會と在滿朝鮮人

申奎燮(日本 駿河台大學)

はじめに

本稿は「滿州國」協和會の組織と活動の分析を通じ、在滿朝鮮時の統合課程と實體を明らかにするのを目的とする。

日本の植民地政策及び大陸政策は先進帝國主義に大公支那がら帝國日本を擴大することであった.それを實現するための最高の統治理念として、朝鮮では「内鮮一體」(日鮮同祖)を、そして

「滿州國」では「民族協和」を主張した.これはただ、帝國日本の擴大と占領地の安定および戰爭動

員のための統合の手段にすぎなかった。

一方、日本の植民地統治正は侵略と收奪だけを重視下のではない.帝國日本の擴大と占領地の安定および戰爭動員のための効率的な方法である、自發的な参加を導きだす手段として統合を重視せざるをえなかったらう。

このような觀點から帝國日本が多民族國家である「滿州國」の統合のため組織した協和會の分析は、在滿朝鮮人の統合政策のみならず、帝國日本の「滿州國」統合政策及び植民政策を究明するものでもある。

協和會に関する先行研究⁶⁸⁾をみると、平野健一郎は協和會を複數民族國家である「滿州國」の政治的安定に着目して分析し、鈴木隆史は總力戰體制構築の一環として分析した.このほかにも任成模、田中隆一、奥村弘、尹輝鐸らの研究があげられる.特に、平野の研究から多くの示唆を受けたが、政治的な安定のため設立された協和會での民族間の實像に対する分析が足りなく、そのため「内鮮一體」との拮抗關係による協和會の限界を看過しているといえる。

本發表はまず、治外法權の撤廢で朝鮮人民會が解散され、「滿州國」の行政機關及び協和會に再編されていく課程を分析する.次に、協和會での組織改編の過程に浮彫りになった朝鮮人が置かれた状況について検討する.最後に聯合協議會の協議過程に現れた民族對立と統合の限界を指摘することにする。

(1) 行政機關の變更

① 朝鮮人民會の解散

帝國日本は1935年2月に外務省内に「滿州國治外法權撤廢に關する委員會」を設け、治外法權撤廢を具體的に推進した.「滿州國」現地でも「滿州國」との連絡をとるため、關東軍、大使館、「滿州國」關係者で構成された現地委員會を設置した.この現

68) 平野健一郎「滿州國協和會の政治的展開」《「近衛新體制」の研究》日本政治學會年報、1973年.鈴木隆史「滿州國協和會史試論 1・2」《季刊現代史》第2號・第5號、1973年5月・1974年12月。

地委員會は日本人居留民處理について審議を開き、その處理要綱を定めた。この要綱では、日本人居留民會の事務のなかから戸籍、神社、教育及び領事館固有事務に関する部分を除いたすべての事務は職員、使節とともに7月1日附きで「滿州國」行政に引き繼がせる等の處理方法が含まれていた。

これに比して、朝鮮人民會の處理は12日に開かれた各省總務廳長懇談会で日本人民會の處理が決定されてから、各省から處理要綱が出された。その要綱は次の通りである。

1. 朝鮮人民會の事務または事業中教育及び儀禮などに關するものを除いた一般行政にかんするものは滿州國に引き繼がせる。
2. 前項の事務處理に必要な施設と職員は必要なだけ滿州國に引き繼がせる。

このように在滿州朝鮮人に對する行政機關は「滿州國」の地方行政機關に再編され一元化された。行政事務の移讓とともに民會の職員や他の朝鮮人團體も「滿州國」關連機關に編入された。これは抵抗日本や朝鮮總督府に屬していた在滿朝鮮人有力者が「滿州國」の權力機關に從屬されたことを意味し、在滿朝鮮人有力者らは新しい局面を迎えたのであった。

② 解散後の處理

「滿州國」と朝鮮總督府との合意の主な内容は「在滿朝鮮人師弟教育行政處理要領」、「移民事項處理要領」、「金融會處理要領」、「衛生正接處理要領」に關するものであった。

このなか教育行政に關しては、滿鐵付屬地の14校意外はすべて「滿州國」に移讓し、移讓された學校での教育方針は「日本人という本質に基づき、滿州國の構成分子として建國の主旨に合致する」教育を施すものであった。

このような合意内容が、從來朝鮮總督府が施行し

てきた生活安定に關する保護措置を維持しようと下のは、治外法權の撤廢で行政權が「滿州國」に移讓されたことへの反發を緩和させるためといえる。

(2) 協和會への再編

第一次治外法權が撤廢され、朝鮮人民會の行政機能が「滿州國」の行政機關に吸収されると、關東軍司令部は同年8月5日、「在滿朝鮮人指導要綱」を發表し、朝鮮人民會の殘された機能を協和會に統合させる方針をとった。

しかし、協和會は「滿州國」の建國理念である「王道政治」「民族協和」思想を在滿諸民族に浸透させ、被支配民族を統合するため、1932年7月25日に關東軍の指導下に設立された一種の「思想團體」であった。

治外法權の方針が決まると、協和會は「滿州國」を構成する各民族を「民族協和」の理念に統合・組織するため、在滿各民族及び在滿日本人にその組織を擴大する計畫を發表し、中央事務局に直屬する臨時新京特別工作委員會を發足させ、各民族に對する組織工作に着手した。

このように、在滿朝鮮人は「滿州國」の統治機關に編入され、「滿州國」の政策に編入されていった。また、「滿州國」の行政機關及び協和會に選出された在滿朝鮮人有力者は「滿州國」の政策及び「滿州國」から滲み出た帝國日本の政策を一般在滿朝鮮人に浸透させる位置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朝鮮人民會が協和會の分會として再編されるにつれ、協和會の朝鮮人會員も急増したし、協和會の組織が朝鮮人社會に急速に浸透したが、數的に協和會での朝鮮人の位置は低かった。一方、在滿朝鮮人は治外法權の撤廢で從來のような「保護」が期待出来ないという不安から、各民族の「平等・共存共榮」を主旨に「民族協和」の實現を目的とする協和會に参加したのであった。

(3) 協和會での朝鮮人

① 分會の組織と活動

1) 民族分會の新設と大衆運動化

協和會は治外法權の撤廢に備え,「民族協和」を強化し,日本人及び朝鮮人らへ協和會の勢力を浸透させるため,協和會の改造を斷行した. 1935年2月「國民運動の提唱,組織の整備運用大綱」という方針を決め,協和會の基本組織であり,活動の主體の分會組織を職業別と民族別の二元體制に變えた. これは各民族各職業各階級の政治的要求を結集し,一つの統合された政治的要求に發展させるためであった.

朝鮮人分會もその組織を擴大させ,その背景には朝鮮人民會が解散されるなか,朝鮮人民會に變わって民族分會にその役割と事業を期待があった.

しかし,協和會組織の大衆組織化は組織の擴大は實現したものの,新舊職員の間での會員及び分會組織原則に對する見解の相違,上からの畫一的な分會の組織化,民族別分會の急増による分會別對立などにより,會員の自發的な参加が制限され,分會活動は形式化され,停滯化を免れ得なかった.

2) 地域分會の導入

協和會の中央本部は1938年1月に「分會組織及び分會活動指導要綱」を制定し,分會組織の方針變更を具體化した. 沈滯された分會の役割を強化するため,分會は民族階級職業の如何を問わず,眞の同志の資格を備えた者を嚴選し,指導訓練して,同じ理念をもつ血盟的同志的結合を試むため,民族別・職業別の原則を廢止し地域別組織を導入した.

このような方針變更は,從來の統治機構の統制下ではあれ,朝鮮人民會,朝鮮人民族別分會と續いた朝鮮人のための朝鮮人の團體の消滅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たし,朝鮮人にとっては,協和會,特に分會での活動に大きな制約を招いた. それは生活上の不安定にまで結びつく問題であった.

以上のように,協和會は「民族協和」を一層強化

させ,民族間の對立を解消する目的から,「全體主義」を掲げ,民族別分會を廢止し,地域別分會に改編した. そして,朝鮮人に對してはまず,「滿州國」の構成員としての意識を植え付け,政策の浸透を強化しようとした. にもかかわらず,民族間の對立は解消されず,分會活動は「少数民族は戸外視されるか,消極的乃至付隨的なものしかない現實」がつついた. このような現象は次に検討する聯合協議會にも反映される.

3) 民族對立への對應

上で言及した地域別分會への改編は反って地域別分會内での民族間の對立を生んだ. そして,奉天協和會本部は1938年9月に民族間の軋轢や摩擦を根絶し,生活の安定を目的に「奉天鮮系工作幹事會」を設置した. また,新京の朝鮮人報道機構の鷄林分會は1939年度の報道運動としての「行政的ないし教化的に滿州國の施策から隔離されている滿州朝鮮人に對する報道」を目的とする自淨運動を提唱した. その具體的な實踐方法は滿朝鮮人が民族的混住生活及び「滿州國」の實情に適應できるよう再編成ないし再訓練をさせ,精神面の運動ともに統制經濟によって發生する生活部門での摩擦や不便を最小限にする生活體制を編成するものであった.

ところで,1937年7月にはじまった日中戰爭により「滿州國」は戰時總動員體制への急速な移行が展開され,翌年2月には國家總動員法が公標された.

分會の組織と機能が國家總動員體制へと移行されるにつれ,分會の生活感れの役割は機能しなくなった. その結果,朝鮮人分會は民族分會としての特殊な機能が發揮できず,朝鮮人の分會への自發的な協力を導きだすのに困難な狀況に陥った.

② 連合協議會の組織と活動

協和會は協和會の基本組織である分會とともに,「滿州國」の複數民族の統合機構として,聯合協議會を重視していた. この聯合協議會の目的は「建國大業翼贊の國民運動」である協和會運動の目的を達

成するため,民族・階級を越え眞の民義を施政に反映指せ、舉國一致の協和政治を確立するとともに、國策を民衆に浸透指せ、道義的に絶對責任をもち自發的に實踐することであった。特に,朝鮮人のための中央行政機關のなく、それに民族別分會の解散で朝鮮人の立場を反映できる團體をない朝鮮人にとっては,自らの民義を反映させる唯一な全國組織であった。

しかし,各聯合協議會はその構成と運營方法の面から,民義の反映とは掛け離れたものであった。それに,各聯合協議會の民族的構成は大體に民族別人口比例で構成され、間島地域以外では,朝鮮人の代表は少數に止まった。このような現象から,朝鮮人代表は意見や要求を表明するのが困難になり,不満が高まり,民族間の對立も深化した。

その結果中央本部は事態の解決と聯合協議會の運營強化のため,1939年からは新しい議決方法として衆議院統裁制の採擇を決定した。

衆議院統裁制に對し,中央本部が作成した「康德6年度工作要領」では,聯合協議會に上程できる議案は,協和會精神・建國精神に合致するもの,または「國益や私心のない民義」を代表するものに制限した。このような衆議院統裁制により,下からの民義特に民族的意識の濃厚な朝鮮人の民義の反映はま

すます困難になった。その結果聯合協議會を通じた各民族の自發的な動員は難しくなったのである。

おわりに

關東軍は治外法權撤廢後の在滿朝鮮人政策として、「滿州國」の政治的安定のため「民族協和」を強調し、「滿州國」の一員としての義務を強要しようとした。

治外法權が撤廢されるなかで、在滿朝鮮人團體は「滿州國」の行政機構と協和會に再編・編入され、「滿州國」の統治體制に吸収された。特に、協和會への再編は朝鮮人に「民族協和」を浸透させ、他民族との對立關係を解消させ、「滿州國」への統合を促すのを目的に實施された。

一方、在滿朝鮮人は治外法權の撤廢をきっかけに「日本臣民」という束縛から逃れ、朝鮮民族としての道を模索しようとする意圖から、各民族の平等・共存共榮を唱う「民族協和」の實現を目標とする協和會へ參加した。しかし、協和會の分會と聯合協議會では朝鮮人の要求は反映されず、反って民族間の對立が一層深化していったのである。

주제어 : 만주국, 조선인민회, 협화회, 조선인, 민족대립